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18년 5월 31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5월 4일

3. 정정사유 :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환매수수료 삭제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환매수수료 삭제	(신설)	2018년 5월 31일 환매수수료 삭제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정기갱신	-	작성기준일 업데이트(운용중인 다른집합투자기구수, 다른운용 자산규모)
제2부. 11. 나.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	환매수수료 삭제	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.	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.
제2부. 11. 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- 종류A, 종류A-e, 종류 A-G, 종류 C-G, 종류 S: 30일 미만 : 이익금의 10% - 종류C, 종류 C2, 종류 C3, 종류 C4, 종류 C-e, 종류 C-I, 종류 C-F, 종류 C-S: 90일 미만 : 이익금의 50%	<u>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.</u>
제2부. 11. 다. 전환	환매수수료 삭제	신탁계약서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.	(삭제)

		<p>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,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
제2부. 13.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<p>- 종류A, 종류A-e, 종류 A-G, 종류 C-G, 종류 S: 30일 미만 : 이익금의 10%</p> <p>- 종류C, 종류 C2, 종류 C3, 종류 C4, 종류 C-e, 종류 C-l, 종류 C-F, 종류 C-S: 90일 미만 : 이익금의 50%</p> <p>(주4)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1. 신탁계약서 제25조의3(수익증권의 전환)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,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(삭제)
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반영에 따른 현황 업데이트
제3부.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제4부. 1.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

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</p>			
<p>제5부. 3. 나.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</p>	<p>환매수수료 삭제</p>	<p>- 수익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공시 또는 통지된 날(모투자신탁 신탁계약의 변경의 경우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<u>신탁계약서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.</u> 다만,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	<p>- 수익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공시 또는 통지된 날(모투자신탁 신탁계약의 변경의 경우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<u>신탁계약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합니다.</u> 다만,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
<p>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</p>	<p>정기갱신</p>	<p>-</p>	<p>최근 결산기 반영에 따른 현황 업데이트</p>